##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90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최보윤·서천호·김미애

정성국 · 김선교 · 박수영

김상훈 • 한지아 • 최수진

김승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 또한,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관광진홍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의2.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·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서의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조(기금의 용도) ①・② (생	제5조(기금의 용도) ①・②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	③		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			
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8의2.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		
	한 관광지 • 관광단지 및 관광		
	특구에서의 교통 및 편익시설		
	설치사업		
9. ~ 10. (생 략)	9. ~ 10. (현행과 같음)	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	